

제 247회 임시회
2006. 2.28(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박종갑 의원외 8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2월 8 일

○ 회부일자 : 2005년 12월 9 일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6. 2. 23)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농업인 단체의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며,
-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적용을 받는 단체명칭을 '생활개선회'를 '충청북도 생활개선회'로, '농촌지도자회를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로, '4-H회'를 '충청북도 4-H연합회'로, '농업경영인회'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로, '여성농업인회'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로 하여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 단체별로 각 기금을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4-H 연합회는 청소년단체임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하도록 함.
(안 제3조)
- 종전에는 농업인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각 단체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는 각 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하였으나, 회장으로 단일화 하여 중복 참석하는 불편을 해소함.
(안 제5조)
-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함.(안 제10조)
- 원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순 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 운용의 투명성을 증대하였으며, 각 단체 별 회원 회비를 별도의 운용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비 납부 및 지출에 관한 사안들이 명료해져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의 회계관리의 기금출납원의 단서조항인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개선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금출납의 통일적인 기준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 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6. 2. 23.
- 발 의 자 : 장주식 의원 외

나. 수정이유

- 기금출납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금의 통일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다. 수정주요내용

- 안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2. 23

제 안 자 : 장주식 의원외

□ 수정이유

기금출납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금의 통일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내용

안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기술과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를 “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회계관리) ②기금운용관은 <u>기술보급</u> <u>국장으로</u> 하고, 기금출납 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p>	<p>제13조(회계관리) ② ----- <u>기술보급</u> <u>부장</u> ----- ----- ----- . <u>다만 충청북도</u> <u>생활개선회 기금은 생활</u> <u>기술과 담당업무 팀장으</u> <u>로 한다.</u></p>	<p>제13조(회계관리) ② ----- ----- ----- ----- .<삭 제></p>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 4-H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충청북도4-H연합회는 청소년 단체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한다.

제4조제1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다만,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충청북도 4-H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보급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교육인력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장, 제2조에서 정한 단체의 단체별 회장.
2.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제8조제1항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원”을 “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①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호중 “기금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보급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중 “제무제표”를 “재무제표”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①원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 4-H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청소년단체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후원법인인 충청북도 4H후원회에서 관리·지원한다.	

현행	개정안
<p>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생략)</p> <p>2. 충청북도의 농촌지도자회원, 생활개선회원, 4-H후원회원, 농업경영인회원, 여성농업인회원의 회비</p> <p>3. (생략)</p> <p>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략)</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②.....</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다만, 충청북도 4-H연합회는 충청북도 4-H후원회로 한다.</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장</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술보급부장</p> <p>③.....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p> <p>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농업 진흥과장, 제 2조에서 정한 단체 의 단체별 회장.</p>

현행	개정안
<p>2. 4-H후원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여성농업인연합회장, 각 단체별 부회장 1인</p> <p>3.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④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 교육인력팀장으로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단체별 임원인 경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적립기금은 농촌지도사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에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p> <p>② (삭제) ③ (생략)</p>	<p>2.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p> <p>3. (삭제) ④..... 업무담당팀장.....</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 회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 ①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 ①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p> <p>1. ~ 6. (생략)</p> <p>7.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위원회.....</p> <p>.....</p>
<p>제13조(회계관리) ①(생략)</p> <p>②기금운용관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p> <p>③ ~ ④(생략)</p>	<p>제13조(회계관리) ①(현행과 같음)</p> <p>②기술보급부장.....</p> <p>...,</p> <p>.....</p> <p>③ ~ ④(현행과 같음)</p>
<p>제14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4조(기금결산) 원장은.....</p> <p>.....</p> <p>.....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p> <p>3. (생략)</p> <p>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②.....</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p> <p>재무제표</p> <p>3. (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 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위생, 잠업, 버섯의 육종·재배, 농·축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과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3. 주요 우량작물·채소종자·누에끼, 뽕나무묘목, 화훼종묘, 우량과수의 묘목, 유용미생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4.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협업화와 농업과 관련된 법인 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5.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5.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